

백인대장 고3전문관 학원 교습비등 게시표(제8조 관련)

2023년 11월 01일 현재

교습과정	교습과목	정원 (반당)	월교습시간 (분)	월교습비(원)	교습 기간 (○월)	기타경비	
						구 분	금액 (원)
보습단과	고등수학1	61	1440	30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수학2	61	2160	450,000	4주		0
진학지도	컨설팅1	61	60	50,000	1주		0
진학지도	컨설팅2	61	60	100,000	1주		0
진학지도	컨설팅3	61	60	200,000	1주		0
진학지도	컨설팅4	61	90	100,000	1주		0
진학지도	컨설팅5	61	90	200,000	1주		0
진학지도	컨설팅6	61	90	300,000	1주		0
진학지도	컨설팅7	61	120	300,000	1주		0
진학지도	컨설팅8	61	120	400,000	1주		0
진학지도	컨설팅9	61	240	300,000	1주		0
진학지도	컨설팅10	61	240	600,000	1주		0
보습단과	고3클리닉	61	480	50,000	4주		0
보습단과	파이널모의고사	61	720	16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수학3	61	720	15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수학4	61	480	10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모의고사1	61	480	15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모의고사2	61	480	80,000	4주		0
진학지도	컨설팅2(고등)	61	60	50000	1주		0
진학지도	컨설팅3(고등)	61	90	360000	1주		0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2023년 11월 01일

(√)학원설립·운영자()교습소 교습자, 개인과외교습자] : (서명 또는 인)

- 주: 1. 게시표와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.
 2. 모든 교습과정, 교습과목, 반에 대한 교습비등을 기재합니다.
 3. 게시는 학원·교습소의 내부 및 외부(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 장소의 내부)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.
 4. 기타경비 항목: 모의고사비, 재료비, 피복비, 급식비, 기숙사비, 차량비

백인대장 고3전문관 학원 교습비등 게시표 (제8조 관련)

2023년 11월 01일 현재

교습과정	교습과목	정원 (반당)	월교습 시간(분)	월교습비(원)	교습 기간 (○월)	기타경비	
						구분	금액(원)
보습단과	고등A1	61	720	19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2	61	840	22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3	61	960	26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4	61	1080	29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5	61	1200	32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6	61	1320	36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7	61	1440	39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8	61	1560	42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9	61	1680	45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10	61	1800	49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11	61	1920	50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12	61	2040	55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13	61	2160	58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14	61	2280	62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15	61	2400	65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16	61	2520	68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17	61	2880	78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18	61	3240	88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19	61	3360	91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20	61	3600	98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21	61	3840	1,04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22	61	4200	1,14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23	61	4800	1,310,000	4주		0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2023년 11월 01일

(√)학원설립·운영자[()교습소 교습자, 개인과외교습자] : (서명 또는 인)

- 주: 1. 게시표와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.
 2. 모든 교습과정, 교습과목, 반에 대한 교습비등을 기재합니다.
 3. 게시는 학원·교습소의 내부 및 외부(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 장소의 내부)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.
 4. 기타경비 항목: 모의고사비, 재료비, 피복비, 급식비, 기숙사비, 차량비